

도급승인 제도 안내문

배경 및 목적

-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 ('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함.
- *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제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승인 절차 간소화

1 도급승인 예외 기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도급인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하나,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도급승인 제외.

□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 (제거 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측정 방법) 화학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필요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①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추가 준비

②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 채기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③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측정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 (1)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
- (2)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
- (3)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 전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 교정
- (4)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5)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 보조자 또한 보호구 착용, 구명밧줄 준비
- (6)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불산, 질산, 염산, 황산(액상)>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이상 측정 결과가 중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수소이온농도(PH 5.8 ~ 8.6) 기준 참조)

↳ 물 또는 초순수 등으로 세정할 경우 해당 설비에 부식 및 설비 손상 등으로 누출, 화학 물질 간 혼합위험성으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세정방법 사용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 화학물질 제거 증빙서류 등

- (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스 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d)이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이상 23.5% 미만) 증빙

- (신고 및 수리절차)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제출(증빙서류 포함)

* 신고 형식 자유(우편, e-mail, Fax 등)

- (작업개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도급작업 개시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개정법 제167조, 제16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적격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시공능력과 실적이 있는 사업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를 말함

*** 개정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승인절차 간소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첨부하여 도급승인 신청 가능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 공정 관련 서류 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제출 생략

[예시]

1.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에 대한 조치를 긴급하게 도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전문업체가 긴급하게 해당 설비를 개·보수(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 누출·화재·폭발 사고)

2. 화학물질의 가스·증기·분진 밀폐·차단 설비 또는 배기장치의 미설치, 고장에 대한 조치를 긴급하게 도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전문업체가 긴급하게 화학물질 밀폐·차단 설비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보수(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 작업)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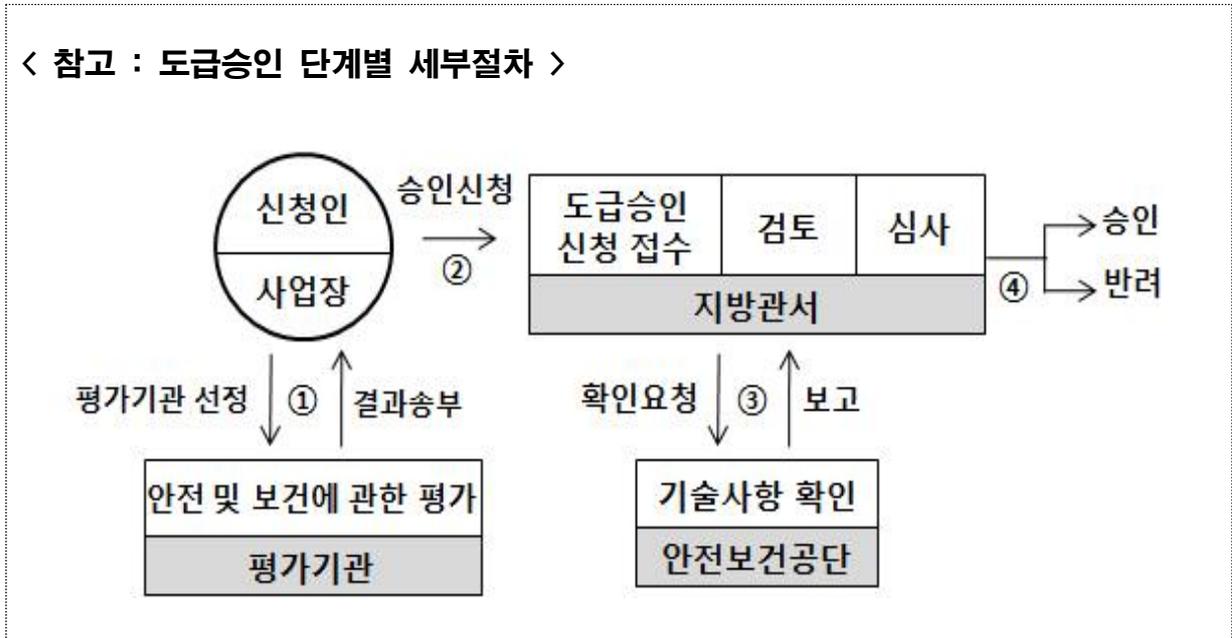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도급승인 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도급승인 신청*(처리기한 14일)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를 의뢰

* 현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개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시행방안

○ (평가항목) ①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 ②안전평가, ③보건평가로 구분

종 류	평 가 항 목
종합 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 등 작업(법 제59조제1항)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 구성〉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p><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3조 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7조 부식성 액체 압송설비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사용 제한,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제620조 환기 등 제630조 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1조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p>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p><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624조 안전대 등, 제625조 대피용 기구 비치</p>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p><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42조 명칭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p> <p><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p>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p><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p>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48조 세척시설 등</p>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기관

○ 안전·보건평가 업무 위탁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함(법 제65조제2항)

- 현재 고용부 고시 및 공고에 의거 4개 기관**이 안전·보건평가분야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 신고대상 작업의 하도급 금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등 도급승인 대상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음.

5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절차

○ 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문서로 제출, 지방관서는 이의제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또한,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에는 도급승인 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

-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제1항)
- * 현행 도급인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조항	위반행위	과징금 근거조항
법 제58조 제1항	도급금지 대상 작업*을 도급한 경우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	법 제161조 제1항제1호
법 제58조 제2항제2호	도급금지 대상이더라도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인 경우 승인 받아 도급할 수 있는데,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법 제161조 제1항제2호
법 제59조 제1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법 제161조 제1항제2호
법 제60조	하도급금지 대상 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	법 제161조 제1항제3호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도급금액,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법 제161조제2항)

□ 과징금 부과기준

- (기본산정) 법률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에 근사하도록 연간 평균 도급계약 금액의 50/100을 기준으로 산정
- 도급금지·하도급금지 위반은 연간 도급계약 금액의 50/100으로 하고, 도급승인 위반은 10% 낮춘 40/100으로 정함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은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 시행규칙 별표(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종 류	평 가 항 목
종합평가	<p>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p> <p>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p> <p>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p> <p>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p> <p>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p> <p>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p> <p>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건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p> <p>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p> <p>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p> <p>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p> <p>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p> <p>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p> <p>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p> <p>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p> <p>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p> <p>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p> <p>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p> <p>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안전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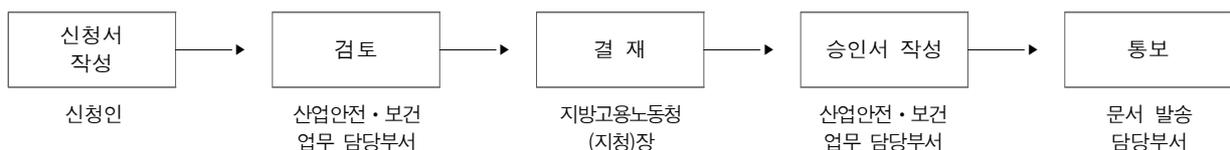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승인 기간		
	도급승인 연장 기간		
도급연장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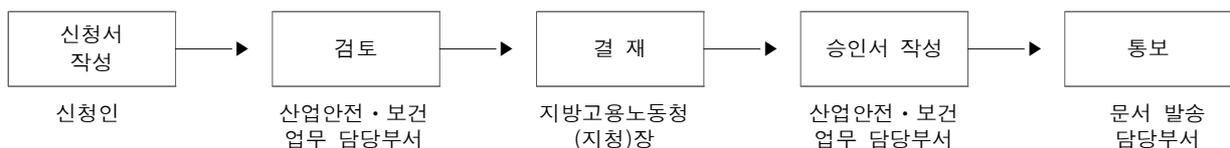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승인 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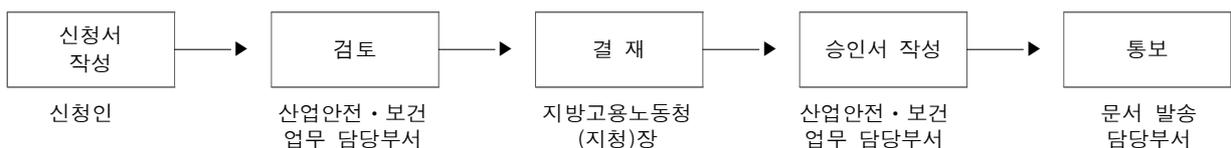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서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도급공정		도급계약기간
		도급승인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장 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승인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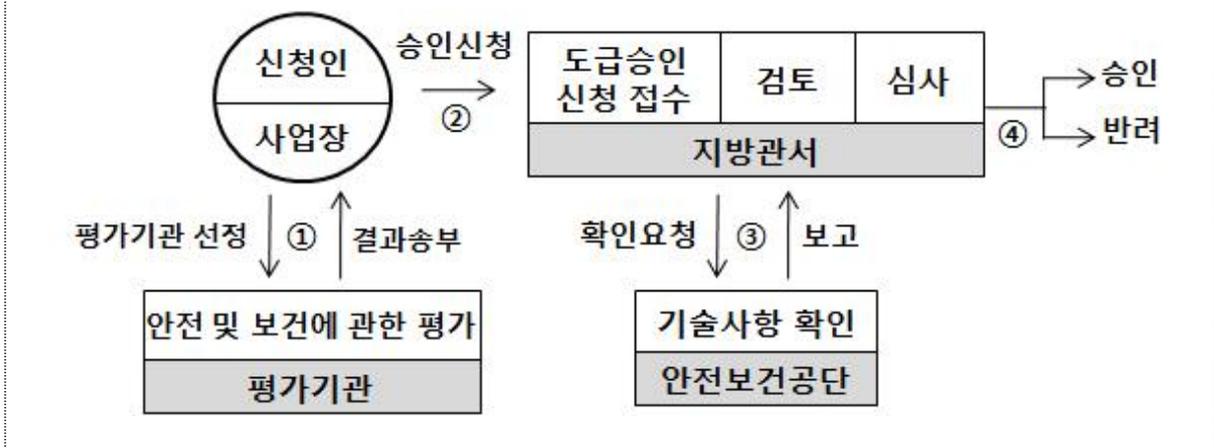
○ 도급승인 절차

- 도급승인 신청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지정된 기관** 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 신청 시 첨부서류 : ①도급대상 작업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음)

** 「업무위탁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현재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계속 확대할 계획임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 신청인 유의사항

- 신청인은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도급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평가결과가 적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신청인은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부 고시 제2016-9호)에 따라 산정한 소정의 평가수수료를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 신청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평가결과(평가보고서) 또는 기술사항 확인 결과로부터 지적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선지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개선하여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선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 위반이 아닌 다른 법조항 위반이 발생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